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8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시설을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또한,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19조제7호)
- 나.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

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(안 제20조제1항)

다. 가스공급시설을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(안 별표 1 제2호하목)

라.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(안 별표 1 제3호러목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녹색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
- 팩스 : 044-201-5574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(044-201-3746, 37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